

# 대출약정서

본 대출약정서(이하 “본 약정”)는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서 2020년 [3]월 [ ]일 체결되었다.

임 (이하 “차주 겸 담보제공자”)

서울 노원구 중계로

주식회사 리딩플러스대부 (이하 “대주”)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 4층(여의도동, 금투센터)

건설 주식회사(이하 “연대보증인”)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 전 문

본 약정은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48-5, 6, 6, 6 번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총 8세대(1개동) 신축건축자금 대출 취급건으로 차주는 대주에게 금 팔억삼천만원 (₩830,000,0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본 약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대주가 차주에게 금 팔억삼천만원 (₩830,000,000) 범위 내에서 자금을 대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주 및 차주는 다음과 같이 본 약정을 체결한다.

## 제1조 정의

본 약정에서 사용된 용어들은 본 약정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며, 문맥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수 및 복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본 약정에서 어떠한 계약이나 서류를 지칭할 경우, 이는 변경, 수정, 보충된 계약이나 서류를 포함한다.

“대출금”이라 함은 본 약정에 따라 차주에게 대출한 후 상환되지 않고 있는 대출 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대출약정금”이라 함은 대주가 본 약정에 차주에게 대출하는 한도 금액으로서 총 금 팔억삼천만원(830,000,000)원을 말한다.

“대출원리금”이라 함은 대출금 및 그에 대하여 발생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지연이자 포함함)의 합계액을 말한다.

“대출만기일”이라 함은 차주가 대주에게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하는 날로서 1회차 기표일로 부터 9개월(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에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을 말하며, 아래 일정표와 같이 일시에 전액 상환한다.(단, 분할 일출하되 인출 횟수는 제한하지 않음)

회차	인출일	인출가능금액	상환일	비고
협의 지급	기성고에 따라 대주가 지정하는 업체의 감리에 따라 협의에 의해 지급	협의지급	1회차 인출일로부터 9월이 지난일	만기일시 상환
합 계		8.3억원		

“부도사유”라 함은 어느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가. 특정회사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 또는 개시 결정이 있거나 이를 위한 보전처분이 있는 경우 또는 해산 또는 청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 나. 특정회사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다. 특정회사의 채권자가 사실상 특정회사의 경영을 관리하게 되는 경우
- 라. 특정회사의 채권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특정회사와 상환기

## 제3조 인출

## 제1항 인출

차주는 제2항의 인출선행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약정금 8.3억 원을 2020년 3월 셋째주부터 인출은 대주와 감리업체와 협의에 따라 기성을 지급할때 인출한다. (단, 분할 인출하되 인출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회차	인출일	인출가능금액	상환일	비고
협의 지급	기성고에 따라 대주가 지정하는 업체의 감리에 따라 협의에 의해 지급	협의지급	1회차 인출일로부터 9월이 지난일	만기일시 상환
합 계		8.3억원		

## 제2항 인출선행조건

(1) 대주가 차주에게 제1항에 따라 대여를 할 의무는, 인출일까지 다음의 사항이 모두 충족되고 인출 시점까지도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또한, 관련 서류들은 그 형식과 내용이 진실하고 정확하며 대주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가. 차주는 대주에게 인출일 이전에 서식 가.의 형식과 내용으로 작성된 인출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차주는 인출요청서의 제출시에 별첨 1. 기재의 인출선행조건 서류들을 대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차주가 본 약정을 위반하거나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라. 차주는 담보로 제공되는 토지의 2순위 근저당 설정이 인출과 동시에 이루어져야하며 2순위 근저당 설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마. 담보제공자에게 담보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바. 차주는 대주가 인정하는 본건사업에 대한 기성공정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 상환

### 제1항 만기일시상환

본 약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차주는 대출만기일에 대출원리금을 대주에게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 제2항 대출금의 임의적 조기상환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주는 언제든지 대출금 전액을 다음의 조건으로 조기에 임의적으로 상환할 수 있다.

- (1) 차주는 조기상환예정일로부터 삼(3)영업일 이전에 대주에게 조기상환 하고자 하는 대출금 금액과 조기상환예정일을 적시하여 통지 후 언제든지 상환 가능하다.
- (2) 본 항에 따른 조기상환금액은 대출금 전액으로 한다
- (3) 조기 상환은 이자지급일에만 가능하다.
- (4) 본 항에 따른 조기상환의 경우 조기상환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 (5) 차주는 본 항에 따라 조기상환한 금액을 다시 차입할 수 없다.

### 제3항 변제의 충당

- (1) 대주가 본 약정에 따라 수령한 금액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대주가 차주에게 달리 통지하지 않는 한, 대주는 다음의 순서로 수령한 금액을 변제에 충당한다.

- 가. 본 약정에 따라 지급기일이 도래한 모든 비용 및 수수료
- 나. 본 약정상 지급기일이 도래한 연체이자
- 라. 지급기일이 도래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 마. 지급기일이 도래한 대출금의 원금

이상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의 당사자들은 첫머리 기재일자에 각자 적법한 권한 있는 자로 하여금 본 약정서 1부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한 후, 대주가 원본을 보관하기로 하며, 나머지 당사자들은 사본을 보관하기로 한다. 간인은 편의를 위하여 본 약정의 체결에 관여한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의 날인 또는 천공으로 갈음할 수 있다.

차 주  
겸 담보제공자

임: (인)  
서울 노원구 중계로



(서명페이지 계속)

대 주

주식회사 리딩플러스대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 4층  
(여의도동, 금투센터)  
대표이사 김 학 형



(서명페이지 계속)

연대보증인

건설 주식회사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대표자 사내이사 배



(서명페이지 끝)